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2019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CP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의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CP 활동 참여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점검, 교육, 훈련 등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보 및 제보자 보호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법무팀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제보자 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실질적인 CP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9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 상 균



대표이사 사장 노 진 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HD한국조선해양(주)(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HD한국조선해양의 규정을 예시하였으며, 실제 적용은 각 사별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주관하며,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2014. 2. 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2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제1편 부당한 공동행위

제1장 공동행위의 개념

I. 개 설	
1. 규제 목적	1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법률	1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개념	
1. 공동행위와 합의	2
2. 공동행위와 교사, 방조 등	2
3. 공동행위 규제와 다른 규제	2
4. 공동행위와 경쟁관계	3
II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동향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집행 건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부과	3
3. 지속적인 법집행 강화	3
4. 국제카르텔 적발 강화	4

제2장 공동행위의 성립

I. 복수의 사업자	
1. 2이상의 사업자	5
2. 사실상 사나의 사업자에 대한 예외	5
II.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의	6
2. 합의의 종류와 담합에서의 합의	6
3. 합의의 추정	6
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8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9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I.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가격협정 행위	11
2. 본 조항의 특징	11
3. 공정위 심결례	11
II.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1. 거래조건 협상	13
2. 본 조항의 특징	13
3. 공정위 심결례	13
III.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공급제한 협정	15
2. 본 조항의 특징	15
3. 공정위 심결례	15
IV.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시장분할 협정	17
2. 본 조항의 특징	17
3. 공정위 심결례	17
V.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설비제한 협정	19
2. 본 조항의 특징	19
VI.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1. 종류·규격 제한 협정	20
2. 본 조항의 특징	20
3. 공정위 심결례	20
VII.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1. 새로운 회사의 설립	22
2. 본 조항의 특징	22
3. 공정위 심결례	22

VIII.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1. 입찰담합	23
2. 본 조항의 특징	23
3. 공정위 심결례	24
IX.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1. 사업활동방해	26
2. 정보교환 담합	26
3. 본 조항의 특징	27
4.. 공정위 심결례	27

제4장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I.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1.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경우	29
2.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경우	30
II.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시장지배력	31
2.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31
3.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31
III.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1.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율성증대 효과	35
2.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35
3.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시 고려요소	35
4. 공동행위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35
5.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35
IV.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36

제5장 입찰담합 및 행정지도

I. 입찰담합

- 1. 관련 고시 37
- 2.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37
- 3. 공정위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37
- 4. 범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1
- 5. 공정위 심결례 42

II.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 1. 관련 고시 45
-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45
- 3.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집행 45
- 4. 공정위 심결례 46

제6장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I. 개념

- 1.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48
- 2. 관련 조문 48
- 3.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구별 48
- 4.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48

II. 감면요건

- 1. 최초 제공 49
- 2. 필요한 증거 49
- 3. 성실한 협조 및 공동행위 중단 49

III. 감면 제외 사유

- 1. 다른 사업자에 대한 강요 50
- 2. 반복된 범위반 50

IV. 감면 신청

- 1. 감면 신청 51
- 2.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 순위 51
- 3. 관련 문제 51

V. 감면여부의 결정

52

VI. 형사 리니언시 제도

52

제2편 경제력집중 규제제도

제1장 개 설

- I. 경제력집중의 의의
 - 1. 제도의 특징 53
 - 2. 재벌 현상 53
- II.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
 - 1. 기업집단 제도 54
 - 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54
 - 3.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55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55
 -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5
 - 6. 공시제도 55
 - 7. 지주회사 제도 55

제2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

- I. 대규모내부거래 및 이사회결 공시제도
 -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57
 - 2.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57
 - 3.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58
 - 4.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9
 - 5. 공시제도의 특례 및 공시 내용의 변경 62
- II. 기업집단 현황 공시
 -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67
 - 2. 주요용어 67
 - 3.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68
- III.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73
 - 2.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73

IV. 과태료 규정

1. 과태료 부과 기준	82
2. 적용범위	82
3. 용어의 정의	82
4.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82
5. 과태료 산정기준	83
6. 부과 과태료의 결정	84

제1편 부당한 공동행위

제1장 공동행위의 개념

I. 개 설

1. 규제 목적

-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²⁾를 말함
-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쟁법은 가장 핵심적인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법률

가. 원칙적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 제40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³⁾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외적 허용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⁴⁾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통상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 한다.

3) 각 호의 내용은 1) 가격 고정 협정, 2) 거래조건 협정, 3) 공급제한 협정, 4) 시장분할 협정, 5) 설비제한 협정, 6) 종류·규격제한 협정,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협정 8) 입찰담합, 9) 기타 경쟁제한적 사업활동방해, 제한 협정, 정보교환 행위 등 9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개념

1. 공동행위와 합의

가. 공동행위의 핵심은 합의

- 합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갈 필요는 없음⁵⁾
- 단,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나 단순한 모방행위, 의식적 병행행위의 경우는 공동행위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남

나. 사법상 의사의 일치인 합의와의 차이

- 사법상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요하지만,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그 인정범위가 더 넓음
- 비진의 의사표시⁶⁾도 부당한 공동행위상의 합의로 인정됨

2. 공동행위와 교사, 방조 등

- 공동행위의 규제대상에는 합의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와 교사⁷⁾는 포함되나 방조는 제외함

3. 공동행위 규제와 다른 규제

가. 시장지배자적 지위의 사업자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적용가능

다. 불공정거래행위(공동의 거래거절)의 경우

- 법 이론상 별도로 적용가능하나,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체 규제(법 제51조)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각각 적용 가능함⁸⁾

4)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각각의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5) 실행행위가 언제 종료하였는가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달라지고, 처분시효의 기산점 및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언제 종료하였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6) 실제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할 진의는 없지만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

7)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후단에서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다.

8)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09누33920 판결(한국레미콘공업협회 사건)

4. 공동행위와 경쟁관계

- 현재 경쟁관계의 있는 사업자들의 담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 사이도 규제대상

II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동향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리 건

2023년도			최근 5년(19~23년)		
전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比	전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比
2,503	145	7.2%	13,043	909	7.0%

- 공정위 전체 사건 대비 사건 비율이 낮은 듯 보이나, 이는 소비자보호 관련법과 하도급, 가맹사업법 등의 집행 수가 많기 때문임
- 실제 공정거래법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집행은 불공정거래행위 다음 순으로 집행되고 있음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부과(88~23년)

전체 공정위 사건		공정위 사건中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中 부당한 공동행위			
건	금액 (단위 : 백만 원)	건	比	금액	比	건	比	금액	比
3,459	11,180,181	2,697	78	10,652,451	95	937	35	7,374,346	69

- 공정위 전체 사건대비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건 수가 비록 적으나, 과징금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3. 지속적인 법집행 강화

- 2014. 9월 입찰담합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뿌리 뽑고자 함⁹⁾
- 최근 개인에 대한 처벌이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 파악하여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있음

9) 공공기관은 입찰실시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가 요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담합의 가능성 등을 적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집행 경험상 공정위에서는 입찰과정과 결과를 놓고 분석할 경우, 대다수의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

4. 국제카르텔 적발 강화

- 2002년 흑연전극봉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베어링 담합 사건까지 점차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행을 늘려가고 있음

제2장 공동행위의 성립

I. 복수의 사업자

1. 2 이상의 사업자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대한 예외

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란?

-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

나. 인정기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 주식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 소유 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대상인 경우

- 입찰담합의 경우 제외
-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 관련시장의 현황,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 모자회사 사이에도 경제적 단일체에 불과할 뿐 법인격이 별개라는 이유로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음¹⁰⁾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누15277 판결(리노스 사건)

II.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의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 합의에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2. 합의의 종류와 담합에서의 합의

구 분	주 요 특 징	담합 여부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일치 및 추종	우연한 일치 또는 단순한 추종	해당 없음
의식적 병행행위	사업자간 의사나 소통 없이 상호 인식하에 불과한 인식있는 병행행위	해당 없음
묵시적 합의	명시적인 합의의 의사표시는 없으나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행위	해당
명시적 합의	상호 의사전달을 통해 합의하는 행위	해당

3. 합의의 추정

가. 합의의 추정 제도(제40조 ⑤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사업자간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추정제도¹¹⁾를 도입함

1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나. 추정의 효과

-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

다.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약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 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라. 추정의 반복

- 추정의 요건인 '외형상 일치'의 입증과 관련하여 비록 입증책임은 전환되었으나 사업자에게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추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사실에 대해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증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음¹²⁾

발생시키는 것이다.

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 수

-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함
- ☑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함

가. 공동행위의 수의 중요성

- 공동행위의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제¹³⁾인지와 대상이 어느 범위로 제한되는지의 문제¹⁴⁾로 나눌 수 있음

나. 동일성의 기준

- 개별적 합의에 서로 동일성이 없다면 하나로 인정할 수 없음
- 동일성의 인정요소

- ☑ 단일한 의사와 단일한 목적이 있는지¹⁵⁾
- ☑ 합의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시장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고려할 것인지¹⁶⁾

다. 연속성의 기준

-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의 공동행위가 되기 위하여 계속 실행되어 연속성이 있어야 함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3) 어느 시점의 행위까지 처벌 및 손해배상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14) 관련 시장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관련시장에서 매출액을 근거로 하므로 관련시장이 확대될수록 회사에게 불리하다.

15) 다만 주체, 의사 목적, 내용에서도 근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성은 인정될 수 있다.

16) 시장이 동일하더라도 개별적 합의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가. 개시일

-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 위반행위의 개시일임
- 추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 합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봄

나. 종료일

-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

- ☑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 ☑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합의 탈퇴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탈퇴의사 표시만으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 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봄
 - ☞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의 마지막 날에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봄
- ☑ 공동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일에 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

다. 관련 문제

- 사업자 탈퇴와 종기

- ☑ 일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카르텔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종료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탈퇴의사 + 합의에 반하는 행위)
- ☑ 전체 사업자에 대하여 종료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탈퇴의사 + 합의에 반하는 행위)
- ☑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일정기간 합의가 사실상 파기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상 파기 요건)

- 일부 사업자 종료 요건과 전체 사업자 종료 요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체 사업자 종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기 요건이 구비된 경우 가능함¹⁷⁾

17) 탈퇴로 1인의 사업자만 남게 된 경우에는 복수의 당사자를 요건으로 하는 공동행위의 개념상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가격을 일부 인하한 것만으로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함 ...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¹⁸⁾

○ 들러리 입찰의 종기에 관하여는 물량배분이 끝난 시점을 종료일로 판단¹⁹⁾

○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행위와 연결하여 보아야 함

☑ 공동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입찰담합에서 자진신고 후에도 물량을 배분받는 등 실행행위를 한 경우 등 자진신고에 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는 종료를 부정함

☑ 자진신고 후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료를 인정함

☑ 자진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²⁰⁾

1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36868판결

20) 국제적 요인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자진신고만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종료를 위하여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시장에서 경쟁가격을 찾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인하가 필요한지,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서와 같이 엄격한 경쟁가격의 입증을 요할지 등이 문제된다.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I.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40조 제1항 제1호)

1. 가격협정 행위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불문
-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하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 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

2. 본 조항의 특징

가. 직접적인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규제

- 가격에 대한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임
- 가격수준을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들은 가격 공동행위에 포함²¹⁾

나. 수요 공동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음²²⁾

3. 공정위 심결례

- 2022. 09. 01. 의결 제2022-070호.

2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운송비 합의에 대하여 가격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5개 닛산자동차 딜러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들은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모임을 구성하여 2016. 2월부터 2018. 8월 기간 동안 닛산차의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을 합의(단,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 2023. 11. 10. 의결 제2023-17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들에게 원자재(경강선재)를 공급하는 포스코는 2016년 2분기부터 경강선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 그 결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할 강한 유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수요자들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54,866백만 원 고발 :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등 6개사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격에 대한 논의는 금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사내 사업계획서 등 문서에 경쟁사의 가격이나 예상 출고가 등이 표기된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 > 일반적으로 경쟁사의 가격을 표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범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정조항에 의하여 법 위반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보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분건 작성할 경우 경쟁사의 가격 등을 표시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 경쟁사 임직원을 접촉해서 가격을 논의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인가요?
- > 업무상 경쟁사 임직원을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으며, 가벼운 인사로 동종 업계의 근황과 각 사의 가격 정책 등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언행도 상대방이 합의로 받아드릴 수 있으며 향후 담합으로 조사받을 경우 불리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40조 제1항 제2호)

1. 거래조건 협정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

2. 본 조항의 특징

가. 거래조건의 담합을 규제

- 가격外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경우 적용됨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타 유형에 비하여 집행 건수가 낮은 편임

3. 공정위 심결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판결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 건 개 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를 전면폐지하기로 합의함 ▪ 법원에서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조건에 해당함 ▪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범위반 사실 공표 ▪ 과징금 : 2,716백만 원 	

○ 2023. 8. 8. 의결 제2023-112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개 요	2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2018. 3. 21.부터 5. 31.까지 3차례 모임과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 무료공고 검수시간 연장,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직종 확대 등 공고 관련 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2,679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가격外 판촉활동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사 임직원들과는 논의하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경쟁시간 과다 경쟁이 우려되어 가격 外, 판촉활동비용(장려금 등)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 제조업자가 판촉물이나 샘플의 제공을 공동으로 금지한 사례 역시 대법원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 규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판매장려금 요율처럼 가격과 거래조건의 담합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나요?
- > 판매장려금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재화,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경우는 가격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담합이나 가격조건에 대한 담합이든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 시 내부적인 영업정책 등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어음이나 현금결제 등 결제조건에 대한 논의도 처벌 대상인가요?
- > 결제 내용이 어음이나 현금이나 역시 거래상대방에게는 주요한 고려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등을 동일하게 하는 것 역시 법에서 이야기 하는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대금결제일자 등을 논의하는 경우(예 : 거래종료일로부터 50일)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III.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1. 공급제한 협정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

2. 본 조항의 특징

가. 공급제한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규제

- 생산량, 출고량 등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금지 조항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최근 해당 조문에 대한 집행 사례는 거의 없음

3. 공정위 심결례

- 2023. 11. 7. 의결 제2023-17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 건 명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붕괴된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하면서 이와 함께 피심인들 간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이자 신규 진입한 덕양화학에게 시장점유율을 보장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860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가격外 생산량, 출고량, 거래제한 등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잊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관련 협회에서의 회의를 통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생산량, 출고량 등을 권고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 >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개별 사업자끼리의 합의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에서의 결정 역시 담합에 해당하며 이는 합의가 아닌 권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 시장악화로 인해 업체별로 상의한 바 없이, 출고량을 줄인 경우도 담합인가요?

-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연히 행위의 일치는 담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두 업체가 생산량 또는 출고량 등을 줄이고 있어 이를 보고 각 업체들이 합의없이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생산량, 출고량 등도 추정조항의 적용을 받나요?

- > 예 해당 사항들도 추정조항에 따라 법 위반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문서 작성할 경우 경쟁업체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표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에 참여시 업체별 생산능력에 따라 응찰 수량을 합의한 경우도 법 위반인가요?

- > 예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응찰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상호 합의한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응찰 수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담합은 합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IV.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1. 시장분할 협정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

2. 본 조항의 특징

가. 시장분할을 통한 경쟁제한의 규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등 특정 시장을 각 사업자들이 분할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규제함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동 행위에 대하여는 꾸준히 집행되고 있음

3. 공정위 심결례

- 2009. 9. 11. 의결 제2009-18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인 7개 사업자는 중간처리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급초과 상태인 어려운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였음 ▪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권역을 벗어나 덤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의 거래처를 존중하고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합의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96백만 원 	

○ 2023. 1. 19. 의결 제2023-00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서울시 마포구청 발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총 4개 권역 중 각 1개 권역을 맡아 대행용역을 수행 ▪ 오랫동안 업무적 교류를 통해 상호 협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기존 권역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단가로 낙찰 받고자 사전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및 투찰률(투찰가격) 등을 합의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832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암묵적으로 서로의 고정거래처로 합의하는 경우 역시 법 위반임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경쟁업체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고객을 업계 상도덕이라는 인식하에 당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 인가요?
- >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협정 등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인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 지역에 대한 배분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 제품의 특성상 운송거리가 제한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위에 질의와 마찬가지로 각자 상대방의 영업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 어느 정도의 합의까지 법위반인가요?
-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체들 스스로 판단 하에 상대방의 영업력이 강하여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즉, 스스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상대방과 의사연락이 있거나, 묵시적으로 '상호 거래 상대방 또는 지역'을 인정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거래상대방 또는 지역을 인정하고 영업을 제한한 행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V.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1. 설비제한 협정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2. 본 조항의 특징

가. 설비를 제한하는 합의를 규제

- 가격, 생산량 등을 직접 합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생산을 위한 설비에 대한 합의도 규제대상임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최근 주요 심결례 중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대하여 규제한 사례는 없음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주요 사례 등이 없어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설비 등에 대한 협의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함

VI.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1. 종류 · 규격 제한 협정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2. 본 조항의 특징

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

- 특정 공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음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동 항목에 대하여 대한 집행건수는 많은 편이 아님

3. 공정위 심결례

- 2006. 7. 27. 의결 제2006-17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의인들은 무제한 요금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출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 이 후, KTF는 무제한 상품의 모집은 중단하였고 LGT는 무제한 정액상품 가입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았음. SKT은 정통부에 상품인가신청(안)을 제출 후 정식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1,782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특정 상품 또는 제품의 출시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제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도 담합행위에 해당함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상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역시 규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 > 상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개발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이로운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 > 경쟁사의 사양 등을 모방하여 제품 또는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 경쟁사의 사양 등을 모방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 없이 공정거래법 관점에서만 본다면 모방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모방의 사유가 해당 제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만 각 사업자가 출시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경쟁사와 MOU 등을 통해 합작개발하는 경우도 법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지요?

 ■ > 경쟁사와 합작개발하는 형태는 특정 상품만 출시하기로 한다거나 하는 합의가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협약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MOU 등을 통해 개발된 제품만을 취급하기로 상호 약정을 한다면 법 위반 위험성이 있습니다.

VII.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1. 새로운 회사의 설립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포함

2. 본 조항의 특징

가. 공동행위를 위한 회사 설립을 규제

- 특정 공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조인트벤처(합작회사)²³⁾

3. 공정위 심결례

- 2023. 10. 13. 의결 제2023-155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2020년 5월경부터 천마 타워, 천마 본사, 라온 APT(미래소유), 골프장, 커피숍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제주도 LPG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공동회사 설립, 가격 인상, 거래상 대방 제한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2,589백만 원 ▪ 고발 : 천마, 제주비케이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경쟁사와 상호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함

23) 별개의 실체들 사이의 결합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와 달리 완전히 통합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기업결합 규제가 적용되고, 통합 이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VIII.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1. 입찰담합²⁴⁾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임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임

2. 본 조항의 특징

가. 입찰행위에 대한 담합만을 별도로 규정

- 기존에 가격담합, 시장분할의 한 유형으로 처리하던 것을 2007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추가
-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²⁵⁾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처벌 외 형법상 입찰방해죄²⁶⁾로도 처벌 가능

나. 공정위의 집행 동향

- 2014년 9월 공정위 내 '입찰담합조사과' 신설²⁷⁾
-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²⁸⁾

24)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위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담합사건에서 큰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다음 목차에서 입찰담합만을 상술할 예정이다.

25) 가격 TE는 시장분할 형태의 담합행위를 의미한다.

26) 위계,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면 성립한다.

27) 입찰담합

28) 공정위는 2014. 8.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였고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는 경우에 개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였다.

3. 공정위 심결례

○ 2015. 7. 20. 의결 제2015-25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H네외 22개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171,071백만 원 	

○ 2024. 5. 30. 의결 제2024-21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디엘건설(주) 등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들은 2019년 1월경 유선 연락을 통해 '대전' 및 '동해' 건은 현대리바트를, '강동' 및 '둔산' 건은 에넥스를 각각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교신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한 결과, '대전 및 동해' 현장은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모두 낙찰, 한편, '강동' 현장은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으나, '둔산' 현장은 에넥스가 아닌 한샘넥서스가 낙찰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297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대형 관급 발주에 대하여 경쟁업체들과 물량배분, 낙찰자의 협의 등은 행위는 담합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함
- 입찰담합은 공정위에서 별도의 과를 조직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은 항상 명심해야 함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대형 프로젝트에서 경쟁사 임직원이 어차피 단일 회사가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낙찰 받을 수 있게 협의하자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별 능력의 차이로 결국 물량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위와 같은 약정은 담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쟁사 임직원이 물량에 대한 협의요청을 해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 > 당사를 제외한 다른 경쟁업체들 간에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가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영업적으로 불리하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순간 당사에게 불리해 보여도 담합은 반드시 적발되고, 그로 인한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납부되며, 개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담합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IX.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1. 사업활동방해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 상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2. 정보교환 담합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뜻하며, 알리는 수단(우편, 전자우편, 전화통화, 회의 등)은 불문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 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단,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봄

3. 본 조항의 특징

가.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규제

- 사업자들 간의 담합을 통하여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집단적 거절행위가 대표적인 사례)

나. 정보교환 담합 규제 도입

- 정보교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적지 않음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정보교환행위 그 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음

1.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

-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는 합의가 있었을 것
- 그 합의 실행 결과 시장의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었을 것
-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 없을 것

2.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 가능성이 있을 것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을 것

다. 공정위의 집행 동향

- 주로 집단적 거절행위에 대하여 집행사례가 많음

4. 관련 심결례

- 2012. 3. 26. 의결 제2012-04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참가 7개 의약품도매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가 축소되어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크게 늘어나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 ▪ 또한 입찰예정가와 낙찰가의 하락으로 도매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함 ▪ 이에 7개 의약품도매상은 도매마진증대를 위해 낙찰의약품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함²⁹⁾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1,174백만 원 	

29) 상호간 낙찰가격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저지 및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하였다.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과 합의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됨
-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경쟁사업자간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상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 > 행위의 유형은 외관상 비슷합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간 경쟁제한이 목적인 반면 공동의 거래거절은 제3자에 대한 경쟁방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 공정위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제4장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I.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1.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경우

-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킴³⁰⁾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할당하는 행위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 위에 열거한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공동행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당해 상품시장이나 지역시장에서 가격·수량·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되고 유지될 수 있음³¹⁾
- 한편 어떤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분석하여 시장 지배력 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단 위에서 열거한 공동행위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상승·산출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
- 위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관되는 경제적 통합³²⁾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

30) 이러한 행위는 성격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1)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가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유형의 공동행위를 수행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련시장에서 당해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2) '경제적 통합'이라 함은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한다.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이 아니다.

2.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들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유형의 공동행위임
 - ☑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
- 이런 종류의 공동행위는 자산, 지식, 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³³⁾
- 당해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단계에서 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³⁴⁾

33) 하지만 참여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창출 증가시켜서 가격 상승, 품질· 산출량· 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34)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II.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시장지배력

-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함³⁵⁾

①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

- ☑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 종료

②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초과하는 경우

- ☑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를 심사함

- 관련 제품의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유지·창출·증가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높은 공동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감소

2.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 능력 · 동기의 증감수준, 경쟁기회 · 경쟁수단 · 경쟁방법의 제한여부 등을 분석함³⁶⁾

①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 참여 사업자간 경쟁능력, 동기의 감소수준이 미약하고, 경쟁기회, 경쟁수단, 경쟁방법의 제한 정도가 낮은 경우

③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경쟁제한 수준이 높아 사업자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동기나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경쟁기회, 경쟁수단, 경쟁방법이 제한되거나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

3.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가. 관련시장의 획정

-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지배력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필요함
-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35) 3.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에서 상술 한다

36) 3.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에서 상술 한다

① 거래시장(상품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결합을 말함
- ☑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5.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
 7. 거래상대방

② 거래지역(지역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함
- ☑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1. 상품의 특성³⁷⁾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³⁸⁾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 형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나. 시장점유율 산정

-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의미
- 시장점유율은 공동행위 수행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³⁹⁾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text{시장점유율} = \frac{\text{당해 회사의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text{당해 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

37) 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38) 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39) 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년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

다. 시장지배력 심사

- 시장지배력 보유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⁴⁰⁾
-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클수록,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은 증가함⁴¹⁾
- 관련제품의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유지·창출·증가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높은 공동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감소함.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수입침투도의 변화 추세
 - 수입침투도 : 내수(생산-수출+수입) 또는 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의 존재여부

-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감소되는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함.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최근 3년간 신규진입 현황 및 변화추세
- 법적, 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입지조건
- 원재료조달조건
-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라.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 능력 · 동기의 증감수준, 경쟁기회, 경쟁수단, 경쟁방법의 제한여부 등을 분석함
- 참여사업자간 경쟁 능력, 동기의 감소수준이 미약하고, 경쟁기회, 경쟁수단, 경쟁방법의 제한 정도가 낮아 관련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사업자들

40) 일부 요소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수준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41)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클수록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 창출, 증가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교환이 없거나 적절하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작아짐

- 반면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이 높아서 사업자간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동기나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경쟁기회, 경쟁수단, 경쟁방법이 제한되거나,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함
- 심사대상인 공동행위가 실제 수행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의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⁴²⁾

마.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시 고려요소

① 합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수단이 있는지 여부

합의이행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 합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② 공동행위 존속기간

공동행위 존속기간이 길수록 참여사업자간 독자적인 경쟁 능력 및 동기를 제한하여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

③ 자산에 대한 공동 사용통제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의 비중과 중요도가 클수록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④ 재무적 이해관계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재무적 상호 이해관계⁴³⁾의 결합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간 경쟁의 동기가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⑤ 참여사업자간 경쟁 허용수준

참여사업자간 경쟁을 허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는 감소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 단체와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감소

바. 경쟁제한 효과 분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상기 분석을 통해 당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와의 비교형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종료함

42) 이 경우 심사요소 중 일부만 분석하거나 일부를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43) 예로 채권, 채무, 주식의 상호보유 등이 있다.

III.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1.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율성증대 효과

- 공동행위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 하락, 품질·유통 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2.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음
- 또한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소비자의 이익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비용절감도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음

3.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 시 고려요소

-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함(아래 사항을 고려)

- 효율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 효율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
- 효율성의 크기는 어떠한지
-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

4. 공동행위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 당해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당해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를 인정함

5.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 효율성은 검증하거나 수량화가 어려움⁴⁴⁾
-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⁴⁵⁾

44) 이는 효율성과 관련된 정보를 오직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5) 효율성증대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IV.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함
-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당해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효과 또한 커야 함.

제5장 입찰담합 및 행정지도

I. 입찰담합

1. 관련 고시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2호)
-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2.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가. 가장 강한 경쟁제한성

-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⁴⁶⁾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나. 조달가격의 상승

- 입찰담합으로 인해 조달가격이 경쟁수준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OECD)

다. 부실시공

- 특히 건설에서 입찰담합은 국가 및 사회 기반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3. 공정위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가. 입찰담합의 제유형

- 입찰가격담합
- 낙찰예정자의 사전 결정
-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경영간섭 등

46) 가격 및 시장분할에 대한 카르텔을 말한다.

나.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⁴⁷⁾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 법 위반 행위의 예시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47)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낙찰예정자의 사전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

○ 법 위반 행위의 예시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 시 낙찰의 협조, 금품 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 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이에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 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예시

-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라.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법 위반 행위의 예시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 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예시

- ☑ 급격한 가격상승 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 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 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마.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 위반임

○ 법위반 행위 예시

-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예시

-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 공표하는 행위
-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바.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 법위반 행위 예시

-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 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 확산시키려는 행위
-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⁴⁸⁾를 명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범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⁴⁹⁾

48)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 철저, 이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있다. 또한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공정위의 조치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49)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하며,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한다.

○ 유형별 벌점⁵⁰⁾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다.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⁵¹⁾
-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금액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⁵²⁾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으로 봄⁵³⁾

라.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와 관련한 직원⁵⁴⁾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음
- 부당한 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임

5. 공정위 심결례

○ 2010. 11. 5. 의결 제2010-13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건설사들은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주진사'와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협조사'를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추진사가 8개 공사에서 모두 낙찰 받았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2,300백만 원(35개사) 	

50)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51)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52)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응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들러리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1/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한다.
 5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013. 3. 18. 의결 제2013-048호⁵⁵⁾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 및 2개 설계용역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는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설계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일부(5개)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9,500백만 원(2개사) 	

○ 2014. 4. 10. 의결 제2014-07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터키대안공사 입찰담합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건설외 7개사는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함 코오롱건설 외 3개사는 들러리 서기로 합의함 이 후 12개사는 위 합의를 실행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40,100백만 원 현대건설외 7개사 고발조치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특히 공공발주에 대한 입찰담합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에서는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담합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됨
- 가격 이외의 기술적 사양에 대한 합의도 담합으로 규제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할 것

55) 본 건은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닌 입찰조건에 대한 합의의 사례이다. 즉, 가격 이외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위는 적발하여 제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결례이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입찰담합에서 '주도자'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도자'란 무엇인가요?
 ■ > '주도자'의 개념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자 또는 선동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위반행위에 끌어드림으로써 위반행위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반행위의 유지에 있어 이탈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는 등 강한 구속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누2441)"

- >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 > 원칙적으로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입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게 되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규모 공사(예를 4대강 사업 등)에서 공구별 입찰시 각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여러 개의 담합으로 규제되나요?
 ■ > 현재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량배분, 즉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낙찰받은 입찰의 계약금액이 됩니다.

- > 입찰담합의 경우 시장분할 등과 행위가 유사한데 입찰담합으로만 처벌 받나요?
 ■ > 과거 입찰담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분할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입찰담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 대다수의 입찰담합은 입찰담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처벌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II.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1. 관련 고시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 위원회 예규 제391호)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가. 행정지도란

-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⁵⁶⁾를 의미함
- 이러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공정위의 지침이 적용

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개입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됨

다.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입장

-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위법으로 판단

3.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집행

-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가.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

나.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법 위반에 해당

56)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

- ☑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 ☑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 ☑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⁵⁷⁾

○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 조건이 유사하게 성립된 경우

4. 공정위 심결례

○ 2007. 9. 12. 의결 제2007-44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10개 손해보험사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2002. 2. 22.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에서 급격한 요금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 사업자들은 금감원 입장과 별개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보험요율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0,436백만 원(9개사) 	

○ 2006. 11. 2. 의결 제2006-25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이동통신요금 사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1999년 말부터 2000년 3월까지 PCS 3사와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총 5-6% 수준의 요금 인하를 요구 ▪ PCS 3사는 별도의 합의를 갖고 정통부의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교환하고 합의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1,782백만 원(3개사) 	

57)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에서 가격인상 등에 대하여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쟁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법령을 적시한 공문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주지 않는 한,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관련 기관 공무원이 업계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격 등을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관련 공무원이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경쟁사와의 별도 협의는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 업계 공청회와 같은 자리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여도 법 위반인가요?
- > 관련 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사별로 준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 > 정부 기관측 권고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 정부에서 특정 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 법령에 따른 처분만이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지시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이 온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6장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I. 개 념

1.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행위 적발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담합참여자의 직접 증거 제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사업자간 불신구조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자진신고 경쟁 촉발할 수 있음

2. 관련 조문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3.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구별

구 분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1순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고발 면제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2순위	과징금 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4.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음

II. 감면 요건

1. 최초 제공

-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1순위자를 결정함

가. 기간별 자진신고의 문제

-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일부에 대하여만 최초 제공자의 요건을 인정하여 감면할 수 없음⁵⁸⁾

나. 관련시장별 자진신고의 문제

- 여러 상품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하나로 본다면 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자진신고는 불인정
- 상품별로 관련시장이 달라서 별개의 공동행위가 성립된다면 상품별로 자진신고가 인정될 수 있음

2. 필요한 증거

-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⁵⁹⁾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3. 성실한 협조 및 공동행위 중단

- 조사가 끝날 때⁶⁰⁾까지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58)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59) 문서 외에 진술도 필요한 증거에 포함된다는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60) '조사가 끝날 때까지'란 공정위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공정위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 임직원이 공정위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공정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함
- 심사관이 조사 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 즉시 중단하여야 함

III. 감면 제외 사유

1. 다른 사업자에 대한 강요

-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음
- 강요 여부에 대한 판단

-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2. 반복된 법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IV. 감면 신청

1. 감면 신청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감면신청서를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함

-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의 제출

- 감면신청서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 구두(61)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함

2.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인지 판단여부는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
-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봄
-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지위 확인의 효력, 지위 확인의 취소, 감면의 불인정,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함

3. 관련 문제

가. 공동 감면신청

- 공동행위에 참여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위가 정하는 요건(62)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나. 추가적 자진신고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음(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의 20% 범위)

61)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2)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만, 다른 공동행위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규모⁶³⁾가 큰 경우에는 그 규모에 전액 면제도 가능함

V. 감면여부의 결정

- 공정위 사무처장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

VI. 형사 리니언시 제도

- 담합 등 주요 공정거래범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기소가 가능하며 다만, 검찰 총장 등의 고발요청이 있을 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여야 함
- 2020. 12. 대검찰청 형사 리니언시 제도 시행에 따라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담합 관련 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형사 리스크가 높아짐(기존에도 법리상 공정위 고발 이전 검찰의 선제 수사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검찰에 리니언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 이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공정위 리니언시 신청만으로, 검찰 수사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별도의 형사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형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순위를 부여하며 1순위는 기소면제, 2순위는 감경 구형 등의 감면효과가 있음)

63) 규모에 대한 판단은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한다.

제2편 경제력집중 규제제도

제1장 개 설

I. 경제력집중의 의의

1. 제도의 특징

- 공정거래법 제3장은 기업결합의 제한⁶⁴⁾과 함께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는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 기타 각국의 독점금지법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임

2. 재벌 현상

-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의 특징은 1인 또는 소수의 친족집단이 소수의 지분을 통하여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독과점 기업들로 구성된 재벌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임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달성 ▪ 위험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독과점화 ▪ 과도한 차입경영 ▪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 ▪ 선단식 경영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

- 이러한 재벌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불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대기업의 복합체인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면서 나타났음

64) 본 편람의 제작 목적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손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어 현업과 업무연관성이 낮은 기업결합 부분은 배제하였다.

II.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

1. 기업집단 제도

가. 기업집단의 의의

- 동일인⁶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⁶⁶⁾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기업집단제도의 특징

- 기업집단의 범위⁶⁷⁾

지분을 기준	지배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⁶⁸⁾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⁶⁹⁾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일정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⁷⁰⁾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가 가능함⁷¹⁾
-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통지함

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⁷²⁾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됨
- 채무보증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함

65) 각 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기업집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참조

67) 지분율과 지배력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다.

68) 친족, 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69)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70)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참조

7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조 참조

72)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3.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⁷³⁾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출자가 인정
- 위와 같은 경우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양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6. 공시제도⁷⁴⁾

- 경제력집중의 규제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제도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도

7. 지주회사 제도

가. 의의

- 주식⁷⁵⁾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나.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

-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의 분사화를 통하여 용이하게 비주력사업을 분리·매각할 수 있음
- 기업운영상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을 분리하여 후자를 자회사에 일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을 지주회사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73) 금융·보험회사를 포함한다.

74) 공시제도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75) 지분을 포함한다.

다. 주요 규제내용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순자본 대비 200%이하로 제한
-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50%이상 소유하여야 함⁷⁶⁾
- 자회사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
-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
- 자회사의 타회사주식 소유 금지

76) 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제2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

I. 대규모내부거래 및 이사회결 공시제도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결 의결을 거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의 약화, 기업집단전체의 동반부실 초래
- 사후적인 조사시정과 함께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대두
- 이사회결 책임강화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⁷⁷⁾에 소속된 회사
-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됨(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면제 - 단, 사익편취 대상회사는 제외)
- 해외현지법인은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편입된 날부터 적용

⁷⁷⁾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1 공정위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일 현재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3.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가. 관련 법조문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공시주체

-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시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공시의무 없으며, 회사에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 모두 포함
- 해외 현지법인 계열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시의무 없음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⁷⁸⁾
- 동일인 관련자

- 총수일가(친가 4촌 이내, 처외가 3촌 이내)
- 계열회사
-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라.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의 의미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

78) 일반적으로 동일인을 의미한다.

마. 공시대상 내부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상품·용역거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를 의미하며 이는 한쪽 회사에만 해당되어도 무방함⁷⁹⁾

바. 공시대상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기준

- 거래금액이 100억 원 회사의 자본총계⁸⁰⁾ 또는 자본금⁸¹⁾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품·용역거래는 동일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의 수익증권을 동일 판매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MMF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입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에 해당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 기준

-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 : 거래금액 =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보험계약 :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100억 원 또는 5%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에 해당
- ☑ 상품·용역거래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4.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 이사회 관련 조문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79)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공시한다.
 80)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의미한다.
 81)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④(생략)
-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관련 고시⁸²⁾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1.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⁸³⁾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이사회 의결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상법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나. 공시 관련 조문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2) 개정 2015. 3. 19 공정위고시 제2015-2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83) 계약을 체결하기 전을 의미한다.

시행령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련 고시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영업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 공시시기

-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3영업일 이내, 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공시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라. 공시내용

-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

마. 공시방법, 절차, 서식

- DART시스템⁸⁴⁾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DART 시스템에 공시

84)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5. 공시제도의 특례 및 공시 내용의 변경

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거래⁸⁵⁾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등 특정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
 -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등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가 아닌 경우

나.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특례(이사회 의결 면제, 일괄 공시)

- 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시

다.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특례(분기별 일괄 의결)

- 금융·보험사가 아닌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고⁸⁶⁾,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시⁸⁷⁾

라. 상품·용역거래의 특례(일괄 의결)

- 상품,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

마. 상품·용역거래 공시의 주요내용 변경

-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 공시
- 거래 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바.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내부거래 발생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

85) 거래일방이 거래조건을 미리 정해주고 다른 일방이 거래조건에 동의할지 만을 결정하는 거래형태가 약관에 의한 거래이며,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거래조건을 정하는 경우는 약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86)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 의결이 가능하다.

87)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분기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별 거래내역을 일괄 공시한다.

사.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품 · 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 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아.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⁸⁸⁾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의 변경사항 공시

- 편입되기 전의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의 공시

- ☑ 신규편입 된 회사는 계열편입 통지일부터 법적용
 - 편입되기 전의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편입 후 새로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하나요?
- >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100억 원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나요?

88) 공시와는 별개이다. 즉, 이사회 의결은 면제되나 공시는 하여야 한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 > 계열사 발행 액면 50억 원의 CP를 계열사가 48억 원에 인수한 경우, 인수한 계열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나요?

- > 유가증권의 거래금액 기준은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 >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출금하지 않고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나요?

- > 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지요?

-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여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 회사 CI(로고) 사용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 계열사와 CI로고(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자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배·관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브랜드(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로 CI라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로서 계속·반복적인 일상적 영업행위와는 구별됩니다. 회사는 CI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공시해야 하고, 예측이 곤란한 경우 거래금액에 거래 예상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공시대상인지요?
- >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입니다.
- > 계열회사에 가입한 퇴직연금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나요?
- > 퇴직연금의 도입배경이 근로자의 퇴직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계열회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이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됩니다.
-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매매 시 거래금액에 VAT가 포함되나요? 또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연간임대료 산출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VAT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수익증권의 거래할 경우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수익증권은 MMF와 기타 수익증권으로 구분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동일 투신운용에서 운용하는 수익 증권 및 MMF는 수익증권과 MMF로만 구분하고 그 안에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당사가 동일 거래상대방과 아래와 같이 거래일을 다르게 하여 유가증권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일이 다른 복수의 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요?

(4월 12일 90억 원을, 4월 14일 10억 원을 거래하여 거래금액의 합계액은 100억 원)

■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대상 1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동일목적에 위한 동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요?

■ >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며,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은 자산거래에 해당됩니다.

■ > 계약 건별 계약체결방식을 기재할 때 계약서상 계약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 등 거래내역을 기재하라는 취지로, 계약명은 본래 계약의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되, 계약명 자체가 영업상 비밀인 경우 등에는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II. 기업집단 현황 공시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09.3.25.)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2. 주요 용어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소속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당해 회사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대표회사	당해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 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동일인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동일인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⁸⁹⁾ 및 3촌 이내의 인척⁹⁰⁾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⁹¹⁾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⁹²⁾ 	
최대주주	소속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함 ⁹³⁾	

89) 혈족은 민법에 의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다.

90) 인척은 민법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동일인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되나 동일인 자녀의 배우자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91)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귀속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한다.

93)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동일인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3.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가. 관련 법조문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⁹⁴⁾

다. 소속회사가 연도중 계열회사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는 편입통지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에 해당사항을 공시⁹⁵⁾

94) 청산중은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휴업중'은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를 말한다.

연도중 계열편입(혹은 신규지정)된 회사들의 공시작성 기준

- ☑ 3월까지 계열편입된 회사 : 연1회 · 1/4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 ☑ 4월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연1회 및 2/4분기부터 공시의무발생. 단, 연1회 공시는 작성양식 1~3까지만 작성하고 나머지 양식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당해 연도에 신설된 회사의 경우 1~3까지만 작성하되 작성 가능한 칸만 작성하여 공시
- ☑ 5월에 계열편입된 회사 :2/4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 계열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제외 또는 지정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⁹⁶⁾

라. 공시책임

- 소속회사는 자기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미공시의 책임을 짐
- 다만,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취합, 공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회사'⁹⁷⁾와 '소속회사'⁹⁸⁾의 역할을 구분

마.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주요 공시항목은 ① 기업집단 일반현황 ② 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③ 주식소유현황 ④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등 크게 5개 범주로 구분되고 이는 23개 항목으로 세분류됨

95) 소속회사는 계열 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계열 편입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기재, 계열편입일 이후 거래 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한다.

96)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와의 거래 내역 중 계열제외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계열제외된 날부터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5월에 계열제외된 회사의 경우 1/4분기 공시부터 면제되나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한 소속회사의 경우 거래 내역은 공시하여야 한다.

97) 대표회사는 소속회사로부터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기업집단 전체의 순환출자 현황 등)은 최종 작성 책임이 있다.

98) 소속회사는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를 취합, 공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고, 자기회사 공시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공시항목	공시 내용	빈도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원수 등 회사의 개요 ▪ 영위업종 현황 ▪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 해외계열회사 현황 ▪ 계열회사 변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주식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지분현황 ▪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 분기 ▪ 분기 ▪ 분기 ▪ 연1회 ▪ 분기⁹⁹⁾ ▪ 분기 ▪ 분기 ▪ 연1회 ▪ 분기 ▪ 분기
순환출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 분기

○ 연1회 공시사항은 5.31일 기한, 분기별 공시사항은 2, 5, 8, 11월말일 기한 내 공시

99) 공시 양식 중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은 연1회이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참조공시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 '참조공시'란 개별 회사가 자기회사 관련내용만을 공시하고, 소속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은 별도로 공시하는 대신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참조할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조공시를 하는 경우, 개별회사 공시정보 이용자가 별도의 검색절차 없이 직접 기업집단현황 공시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먼저 전자문서를 DART 시스템에 접수시켜야 개별회사의 참조공시 링크가 가능하므로 공시기한일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공시주체에 해외계열사가 포함되나요?
- > 해외계열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업집단 현황 공시사항 중 재무현황, 손익현황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재무제표는 어떤 재무제표를 의미하나요?
- > 연결이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개별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재합니다.
- > 12월말 기준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을 2월말까지 공시해야 하나, 2월말에는 12월말 기준 결산이 미확정되는데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에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내역도 포함해서 공시하나요?
- > 자금차입현황의 경우 기타 합계에 포함하여 공시합니다.
- >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과 계열회사간 거래현황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요?
- >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계열회사간 거래현황 공시양식에 따라 공시하면 됩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외화 관련 거래발생시 외화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율을 적용해도 되나?
- > 회사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 금융보험사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위한 금융거래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대여금(증권사의 신용공여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여금현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차입·대여현황은 특수관계인과의 순수한 재무적 성격의 자금차입약정에 따른 자금대차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금융거래에 부수된 대여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대차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 >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는 MMF 상품에 가입한 경우, MMF상품의 기초자산에 계열사 회사채, CP 등이 편입되어 있으면 유가증권거래현황에 포함시켜 공시하나요?
- >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은 매도회사가 공시하므로 MMF 가입(매입)회사는 공시의 무가 없습니다.
-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유상증자한 회사가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하는지요?
- >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공시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상품 등의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는지요?
- > 금융당국이 분류하는 기준과 금융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요?
- > 공정거래법 제2조의 19호 여신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합니다. 단, 해외건설 시 공사이행보증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예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함

III.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1.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형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특히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음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

2. 공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가. 관련 법조문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 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대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③ 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 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 ⑤ 법 제2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15·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¹⁰⁰⁾
- 연도 중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공시의무 발생.

다. 공시기한

- 공시사유발생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공시¹⁰¹⁾

공시사유발생일은 다음을 의미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계열회사 보유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
-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있을 때

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의 유의사항

①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¹⁰²⁾
-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

② 자기자본 산정방법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가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
 -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가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을 때, 당해 사실의 효력 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

③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적용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
- 즉, 2014. 12. 31.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른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발생하는 중요사항 변동에 대하여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¹⁰³⁾

④ 비상장회사의 수시공시 발생상황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100) 금융보험사,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으로 청산· 휴업(1년 이상)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101)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02)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03) 새로 설립된 회사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변동

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 동일인 측 최대주주 또는 동일인 관련자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인 측 보유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 ☑ 동일인 측 최대주주(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수나 지분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간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 최초 계열편입 시
-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사유는 불문,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음

② 계열사 주식보유 변동

-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감자, 증자 등 변동 사유는 불문
- ☑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1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 최초 계열편입 시
- ☑ 보유주식에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¹⁰⁴⁾

바.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① 고정자산 취득 결정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취득중인 자산(건설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포함

② 고정자산 처분 결정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 포함

104) 다만, 보유주식수나 지분율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회사가 변동된 경우 공시하여야 한다.

③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 포함

④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계열회사 제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 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도 포함

⑤ 증여 또는 수증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증여 또는 수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⑥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⑦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⑧ 채무인수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⑨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⑩ 유(무)상증자 결정

- 유(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¹⁰⁵⁾

⑪ 감자결정

-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⑫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105) 유무상증자의 동시발생의 경우도 동일이다.

사.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① **영업양도 · 영업양수 결정**
 -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 · 영업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② **영업전부의 임대 · 경영위임 등 결정**
 -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③ **영업전부의 임대 · 경영위임 등의 계약변경 · 해지 결정**
 -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④ **회사합병 결정**
 - ☑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주주총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이사회 승인으로 같음)
- ⑤ **회사분할 · 분할합병 결정**
 - ☑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⑥ **주식교환 · 이전 결정**
 -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⑦ **해산사유 발생**
 -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외국법인 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다만, 회사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 ⑧ **회생절차 개시 · 종결결정**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 통보 받은 때(외국법인 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
- ⑨ **회생절차 폐지결정**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8장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사실을 통보 받은 때
- ⑩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중단 · 해제**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에 의한 관리절차개시 · 중단 · 해제의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외국법인 등의 경우 채권은행 등의 관리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 중단 · 해제된 때를 포함)

아. 기타 공시 관련

- 공시규정의 용어 중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음¹⁰⁶⁾

106) 즉, 주식양수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날, 지분양수의 경우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임원 변경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날을 말한다.

- 공시규정의 용어 중 '결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 매수하는 주식이 자기주식/계열회사/타법인 주식인지에 따라 공시 사항이 달라짐

자기 주식	계열회사	타법인 주식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할 때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	자기자본의 5%이상 매수 할때는 타법인의 주식취득 공시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 공시에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은 어떻게 하는지요?
- > 비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시양식에는 자사주로 표시하여 기재
- > 최대주주 보유주식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요?
- > 동 공시사항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구성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됩니다.
- >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 공시에서 계열회사이면서도 해외법인인 경우(예, 중국현지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에서 '계열회사'는 국내법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변동현황 공개)만 해당되고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의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 > A사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B)(외국인이 51% 소유)의 주요주주(동일인관련자)가 변경될 경우 A사는 공시의무가 있는지요?
- >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지분이 100분의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A사는 '계열회사(B)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B사도 '최대주주(A)사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설공사비도 비유동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공시대상인지요?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은 공시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중인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입니다.
- > 비유동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단일 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단일 건이란 계약 건(이사회결정 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일인물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의 자산별로 계약(이사회 결정)을 한다면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는 공시관련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 > 비유동자산 취득 시 하나의 업체에 두 가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시판단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계약되는 건별(이사회결정건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하나의 계약을 두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한 경우에는 두 개의 계약금액을 합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 > 사업부지 매입 등 비유동자산 취득을 위한 입찰의향서 제출 시 공시대상인지요?
- >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비유동자산 취득을 하고자 이사회 의결 또는 대표자 결재(또는 내부결정)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시하여야 합니다.
- > 타법인 주식이라 함은 보유주식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각각의 회사별 주식을 말하는 것인지요?
- > 타법인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타 법인을 각각의 회사별로 파악하여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타법인 주식 전부를 의미합니다. '타법인'에는 국내의 계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포함됩니다. 즉, 국내의 비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요?
- > 주식보유변동현황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됩니다.
- > 주식의 취득 및 지분 투자대상이 동일회사 기준인지 또는 총 투자금액 기준인지요?
- > 회사별 기준이 아닌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1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할 경우 취득 건별로 공시해야 하는지요?
- > 하루 동안에 다수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거래 총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기준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 해외 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이 달러로 거래될 경우 환율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이사회 결의시점과 실제 거래시점의 차이 발생)
- > 공시사유발생일(이사회 결의일 또는 대표이사 결정 등)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금액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시가가 확실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 시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 > A건설회사는 B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습니다. B사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 방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 대출금에 대하여 A사가 지급보증한 경우 공시대상인지요?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 행한 지급보증은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행보증'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등의 이행보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 > 자회사의 주요공시내용을 지주회사가 공시한 경우 자회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자회사가 직접 공시하여야 합니다.

IV. 과태료 규정

1. 과태료 부과 기준

- 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¹⁰⁷⁾

2.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

-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지연하여 공시한 자
-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 허위로 공시한 자

3. 용어의 정의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기본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제3호 별표9 중 법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관련금액이나 관련지분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 ▪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별 관련 지분을 1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임의적 조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 	
동일인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 금액을 의미 	

4.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과태료의 면제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의 두절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경미한 위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107) 개정 2013.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4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5. 과태료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공시여부	위반 유형		과 태 료 (단위 : 만원)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누락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 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 난 후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허위 공시			1,000

-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함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항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함

나. 기준금액

-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미만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관련 금액(자산총액기준), 지분율	적용비율(%)
10% 이상	100
8% ~ 10% 미만	90
6% ~ 8% 미만	80
4% ~ 6% 미만	70
2% ~ 4% 미만	60
2% 미만	50

다.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은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 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x 가중비율의 합계
-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x 감면비율의 합계

-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 ☑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 감면 조정 사유 및 비율

-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6. 부과 과태료의 결정

-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함
-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2004년 2월	초판 발행
2015년 12월	제2판(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전면개정) 발행
2023년 3월	제3판(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전면개정) 발행
2024년 9월	제4판(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일부개정) 발행

편 찬 부 서 HD한국조선해양 준법경영실 / 컴플라이언스팀
담 당 심재삼 책임 (02-479-5245 / jaesam.shim@hd.com)
탁정민 책임 (02-479-5433 / jungmin.tahk@hd.com)
안성호 책임 (02-479-5264 / sungho.an@hd.com)
이아림 매니저 (02-500-4762 / ahrim.lee@hd.com)

이 책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